

파인피스 섬에서의 무력행사 사건 요지 및 제소 경위

〈제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파인피스 섬에서의 무력행사 (웨스트피크 v. 유포레즈)

Use of Armed Force in the Island of Pinepeace
(Westpeak v. Yuporez)

- 사건 요지 및 제소 경위 -

2009. 6.

1. 사실(Facts)

1) 2006년 5월부터 유포레즈(Yuporez)국(國)에서는 군사정권에 의하여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인권탄압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그 인접국인 프로메니아(Fromenia)국에서도 2006년 11월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새로이 집권한 신정부에 의하여 대대적인 인권탄압이 가해지고 있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군사독재를 비판하며 민주정치 회복을 요구하는 인사들에 대하여 혹독한 탄압과 처벌이 가해지고 있었는데, 양국 내에서는 각기 반국가사범으로 분리된 1백여 명이 사형에 처해지고 수천 명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장기 구금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두 국가로부터 인접국으로 피신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수가 2009년 5월 현재 1만5천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 두 국가는 모두 UN회원국이며,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다.

2)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07년 11월 ○일과 2008년 1월 ○일에 채택된 결의를 통하여, Yuporez국과 Fromenia 의하여 자행되는 인권 침해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확인하고, 양국에 대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헌장 제41조에 의거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들 양국을 상대로 무기 등 군수장비의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이들 양국으로부터 생산되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강제조치를 결정하였으며, 각국 및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도 강도 높은 비난이 가해지고 있었다.

3) 2008년 5월 초 Yuporez에서는 인권탄압에 저항하는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는바, 정부가 병력을 동원하여 민중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자 이는 곧 무장투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시위 및 투쟁은 며칠 후 Fromenia로 확산되었다. 정부군과 유혈투쟁을 전개하던 양국의 반정부단체들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인접국인 웨스트피크(Westpeak) 령(領)의 무인 소도인파인피스(Pinepeace) 섬에서 Westpeak 정부의 지원 하에 근거지를 확보하고, 양국 정부에 의하여 반국가사범으로 지목되어 수배를 받고 있던 수백명의 정치가와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한편, Westpeak 정부는 이들의 근거지에 숙소 설치와 식수 및 식량 공급을 지원하고 있었다.

4) 그러던 중, 2008년 11월 13일 새벽, Yuporez과 Fromenia 양국 정부는 Westpeak에 대해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Pinepeace 섬에 일단의 정규군 병력을 파견하였으며, 이들 병력은 이 섬에 상륙하여 반정부단체 구성원들을 공격하고 그 근거지를 장악한 후, 이들 구성원들과 아울러 그들에 의하여 보호받던 양국의 정치가와 인권운동가들을 체포하여 각기 소속국으로 강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Yuporez와 Fromenia의 군병력들이 화력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화재 등으로 Pinepeace 섬의 오래된 수목들과 희귀식물 등 초목들이 대거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5) 이에 Westpeak 정부는 Yuporez와 Fromenia가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를 침범하여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국의 영역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Yuporez와 Fromenia는 이에 맞서 자국은 국제법상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응수함으로써, 양국 간에 심각한 외교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Westpeak 정부는 이들 양국과 각각 세 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2. Westpeak의 제소

Yuporez와 Westpeak는 ICJ 규정 제36조 2항에 따라 강제관할권을 수락하고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Westpeak는 2009년 5월 25일 Yuporez를 상대로 재판소에 일방적으로 제소하였다. 한편, Fromenia는 ICJ의 재판관할권을 수락한 바 없었다. Westpeak 정부는 제소신청서(Application)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선언하여 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하였다.

- “1. Yuporez는 Westpeak의 영토를 무력에 의하여 침범함으로써, UN헌장 제2조 4항에 의하여 확인된 무력행사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Yuporez는 Westpeak의 영토상에서 그 동의 없이 무력을 행사하고 그 영토상에 체류하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함으로써 Westpeak의 주권과 영역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3. Yuporez는 위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이행으로서 Westpeak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 보장과 아울러 사과를 포함한 만족을 제공하여야 한다.
4. Yuporez는 Pinepeace 섬의 희귀식물 등 초목들에 대해 가하여진 손해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소의 처리 및 선결적 항변 및 본안절차의 진행

1) 재판소는 규정 제40조 2항에 따라 Westpeak의 제소 사실을 Yuporez 정부에 통보하였으며, 동 조 제3항에 따라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을 가진 모든 국가들에게도 이를 통보하였다. 재판소 구성원 중 이들 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양국은 각기 한 명씩의 임시재판관(judge ad hoc)을 선임하였다.

2) 재판소는 양국의 소송대리인들과의 회합을 거친 후, 2009년 6월 26일의 명령을 통하여 양 당사자의 변론서 제출시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즉, Westpeak의 제소변론서(Memorial)의 제출시한은 2009년 7월 27일 그리고 Yuporez의 피소변론서(Counter-Memorial) 제출시한은 2009년 8월 15일까지이다.

3) Westpeak의 제소변론서는 기일 내에 제출되었으나, Yuporez는 그 피소변론서 제출 시한 내인 2009년 7월 31일, 본 사건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을 제출하였다. 이에 재판소는 재판소 규칙 제79조 제3항에 따라 본안절차를 중단하고, Westpeak 정부로 하여금 Yuporez로부터 제출된 선결적 항변과 관련된 의견서를 2009년 8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4) Westpeak 정부는 Yuporez의 선결적 항변과 관련한 의견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였으며, 재판소는 2009년 8월 8일과 9일에 열린 공개변론을 거쳐, 2009년 8월 11일 판결에서 Yuporez의 선결적 항변을 기각하였다.

5) 재판소는 본안절차를 재개하였는바, Yuporez의 피소변론서(Counter-Memorial) 제출시한을 2009년 8월 26일로 연장하였다. Yuporez의 피소변론서가 기일 내에 제출됨으로써 본안과 관련된 서면절차는 종결되었으며, 재판소는 9월 26일 공개법정에서 구두변론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